

## 치매 환자의 관급영양에 대해

윤종철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

### □ 왜 치매 환자에게 관급영양이 필요할까?

중증 치매 환자는 다양한 이유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됨.

#### ○ 삼킴과 관련된 증상

- 음식물을 씹는 운동이 부적절하거나 아예 씹지 않음.
- 씹은 후에라도 실제로 삼키는 시간이 증가함.
- 사례가 걸려 음식물 섭취 시에 기침을 하거나 심한 경우 숨이 막힘.

#### ○ 식사 행동과 관련된 증상

- 집중력 저하로 인해 음식에 흥미를 갖지 못함
-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식을 거부함.
- 음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행증으로 인해 식사 행동을 하지 않음
- 심한 우울증상이나 식욕 저하

### □ 관급영양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 영양불량의 예방과 호전
- 체중 감소의 회복
- 욕창 예방과 회복
- 갈증과 배고픔 및 탈수 예방
- 흡인과 흡인성 폐렴의 예방
- 삶의 질 향상
- 생명 연장

\* 방치 혹은 방임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 이로 인한 책임에 대한 대응책.

### □ 기대를 충족시키는가?

#### ○ 객관적 증거는 불충분

- 대부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결과 부족
- 하지만, 연구 자체가 부족함.
- 무작위 표본 연구의 어려움 존재

○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tube 유지를 위한 신체 억제 증가
- tube 사용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 피부손상, 위장 자극으로 인한 구토, 출혈 등

#### □ 가이드라인은 어떤 입장일까?

- 대표적인 영국의 NICE 가이드라인의 입장
  - 음식과 음료를 가급적 오랫동안 입으로 먹도록 함.
  - (어떤 분야라는 정의는 없지만) 전문가 평가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함.
  - 연하곤란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관급영양을 반드시 고려할 것.
  - 중증 치매에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모든 경우에 사용하지 말 것.
  - 영양 공급의 시작과 제거에 윤리적, 법적 원칙을 적용할 것.

요약하면, 1) 가급적 구강섭취하고, 2) 회복 가능한 조건과 관련된 연하곤란이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사용하되 3) 중증 치매에서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연하곤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의학적 뿐 아니라 윤리적, 법적 고려를 포함해서 결정함.

문제가 되는 상황은 3)의 경우임.

#### □ 관련된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떻게?

- 중증 치매환자
  - 가장 중요하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음.
  - 사전 의료지향서(advanced directive)가 있으면 참고가 될 수 있음.
  - 아무것도 없다면?
  - 일반인들이 관급영양을 원하는 비율은 낮은 편임 (대략 10%-30%, 연구에 따라 큰 편차)

- 가족
  - 환자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환자와의 갈등, 가족 간의 의견차이
  - 가족 내 혹은 외부에 후견인이 있는 경우 의견 조율 필요

- 의료진
  -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음.
  - 의학적 측면에 대한 과도한 강조의 우려가 있음.
  - 선한 의지와 함께 권한과 책임으로 갈등의 여지가 있음.

\* 관급영양은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개인의 가치관이나 가족 내의 사정 등 사회문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모든 관련자들은 일정한 갈등과 감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됨.

## □ 어떻게 하나

○ 관급영양에 앞서 대안적 방법을 시도할 것.

- 치매 환자와의 친밀감 형성
- 비약물적 식사행동 촉진방법 사용

예) 충분한 식사시간 확보, 식사 시간 변경, 음식물의 고형성이나 크기 변경, 좋아하는 음식 제공, 향과 색감이 있는 음식제공, 모델링, 턱 주변 자극, 기술적인 떠먹이기.

- 우울증 등 가역적 신체 상태에 대한 평가와 치료

○ 감성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 가족이나 일반인에게 음식물 섭취는 상징적 의미가 큰 행위임.
-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결정임을 충분히 고려할 것.
- 결정 이후에도 갈등은 잔존할 수 있음.

○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

-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불충분하거나 편향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말 것.
- 의료진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

- 치매 초기 이전에 환자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할 기회를 잡을 것.
- 연하곤란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이나 대리인과 상의할 것.
- 문서화하는 것이 좋음.

요약하면, 만성적으로 진행된 중증 치매환자에게 관급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안적 방법을 충분히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나 그 대리인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내년 시행 예정인 연명치료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